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

-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마련 및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 등 사용시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

이번 개정은 작년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법제처의 입법지원하에 관련 부처인 여가부, 식약처, 기재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개정으로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신분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확대하였다.

이완규 처장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책임자	팀 장	정세희 (044-200-6740)
		담당자	사무관	김지희 (044-200-6744)